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36
----------	-------

발의연월일 : 2025. 6. 11.

발의자 : 민병덕 · 임오경 · 황명선

김영배 · 박선원 · 황운하

김문수 · 윤준병 · 김현정

복기왕 · 황정아 · 부승찬

염태영 · 정진욱 · 이용선

이수진 · 이강일 · 전용기

백혜련 · 신장식 · 박홍근

송기현 · 김태선 · 조계원

허성무 · 박민규 · 윤후덕

김병주 · 이정문 · 임미애

이광희 · 이병진 · 송재봉

유동수 · 이인영 · 서영교

김태년 의원(37인)

제안이유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단순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

또한 국제사회는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국 · EU · 일본 등은 발행 · 유통 전반에 걸친 인허가제, 스테이블코인 규

제, 불공정거래 금지, 회계 기준 마련 등을 이미 도입함.

그러나 국내법상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로,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등록·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공시·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고, 아울러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 나.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리 및 책무, 국가 및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다.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디지털자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인가·미등록·미신고 영업행위를 금지함(안 제19조부터 제34조까지).

마.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무, 경영건전성, 전산안정성 등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59조까지).

바. 디지털자산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준수사항을 공통 영업행위 일반원칙과 디지털자산업별 영업행위 원칙 등을 규정함(안 제60조부터 제101조까지).

사.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법률로서 허용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함(안 제102조부터 제108조까지).

아. 디지털자산시장의 개설,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유지심사·거래지원종료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공시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함(제109조부터 제114조).

자.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등을 허용함(안 제115조부터 제121조까지).

차. 디지털자산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하고, 그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122조부터 제134조).

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

한 등을 규정함(안 제135조부터 제148조까지).

타. 디지털자산업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9조부터 제155조까지).

파.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56조부터 제162조까지).

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3조부터 제171조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디지털자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디지털자산) ①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만,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5. 「전자금융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금융

6.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7.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디지털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2. 일반 디지털자산

③ 이 법에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란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일반 디지털자산”이란 제3항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제4조(디지털자산업) ①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디지털자산매매업

2. 디지털자산중개업

3. 디지털자산보관업
4.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5.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6. 디지털자산일임업
7. 디지털자산자문업
8.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9.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10.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

②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이하 “매매”라 한다)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보관업”이란 타인의 디지털자산을 보관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이란 2인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대여 또는 처분에 권한이 있는 경우
2. 그 밖의 행위 성격 및 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이란 디지털자산지갑에 대한 관리권한을 이용자로부터 위임받거나, 이용자에게 디지털자산지갑에 대한 접속장치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일임업”이란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그 이용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자문업”이란 디지털자산의 가치 또는 매매판단(종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이란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아 디지털자산중개업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이란 디지털자산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매매판단 또는 디지털자산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이용자가 아닌 다

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자산 매매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외에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디지털자산업의 적용배제) ① 자기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자문업 또는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자문업 또는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으로 본다.

③ 디지털자산중개업자가 이용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매매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디지털자산업자) ①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업자”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디지털자산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매매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중개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보관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보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⑤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일임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⑧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자문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⑨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⑩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⑪ 이 법에서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자”란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자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제1항, 제74조 및 제75조만 적용한다.

제7조(디지털자산시장) ①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이란 디지털자

산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개설한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란 디지털자산중개업자 중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8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매매권유”란 특정 이용자를 상대로 디지털자산의 매매·보관 또는 디지털자산지갑관리계약·디지털자산자문계약·디지털자산일임계약·디지털자산주문전송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분산원장”이란 디지털자산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이용자”란 디지털자산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디지털자산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디지털자산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전문이용자 또는 일반이용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전문이용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일반이용자”란 전문이용자가 아닌 이용자를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발행”이란 디지털자산을 생성하여 이용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사전모집”이란 발행인이 디지털자산을 이용자에게 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취득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법에서 “접근매체”란 디지털자산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3. 디지털자산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이용자의 생체정보
5. 제1호 또는 제2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형법의 적용제외) ① 발행인이 이 법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가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편 이용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디지털자산업자의 책무

제11조(이용자의 기본적 권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발행인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디지털자산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

시킬 권리

4. 디지털자산의 거래 및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디지털자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이용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디지털자산업자와 더불어 디지털
자산산업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디지털자산을 올바르게 선
택하고, 제11조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
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 실
현과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이용자 권리 증진과 디지털자산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자
산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예산의 지원과 운영 개선
4. 이용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 육성

제14조(디지털자산업자의 책무)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이용
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국가의 이용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2.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3. 디지털자산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4. 디지털자산에 관한 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책무
5. 이용자에게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6.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제3편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제15조(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디지털자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둔다.

- ②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디지털자산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상황에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디지털자산 실태조사의 시행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제16조(디지털자산위원회의 조직) 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무원
3. 제122조에 따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장
4.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지명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비자 및 이용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디지털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마.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디지털자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디지털자산산업의 진흥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
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이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디지털자산위원회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디지털자산 실태조사) 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활동 실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현황
2.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활동
3.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환불준비금 현황
4. 디지털자산산업의 경쟁도 평가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4편 디지털자산업

제1장 디지털자산업의 인가 · 등록 · 신고 등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9조(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디지털자산업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디지털자산업(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 디지털자산일임업 · 디지

털자산자문업 ·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또는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할 수 없다.

제20조(디지털자산업의 인가) ①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디지털자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디지털자산업의 종류

2. 이용자의 유형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외국 디지털자산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디지털자산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디지털자산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36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디지털자산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디지털자산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디지털자산거래 등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안정성을 확보할 것
 9. 디지털자산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산업인 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22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디지털자산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및 제5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6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디지털자산업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업인가의 내용
2. 디지털자산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디지털자산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예비인가) ① 제20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2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자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6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제20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제20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

된 요건을 적용한다.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5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디지털자산업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 디지털자산일임업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26조(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 디지털자산일임업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의 등록) ①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 디지털자산일임업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디지털자산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 디지털자산일임업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의 유형

2. 이용자의 유형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나. 외국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로서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 다. 외국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자로서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 라. 외국 디지털자산일임업자로서 디지털자산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 마. 외국 디지털자산자문업자로서 디지털자산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디지털자산운용인력(제125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운용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매매권유자문인력(제125조에 따른 매매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이 경우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가에서 디지털자산운용인력 또는 매매권유자문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디지털자산일임업의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 나. 디지털자산자문업의 경우에는 매매권유자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임원이 제36조에 적합할 것
 5. 대주주나 외국 디지털자산일임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나.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 외국 디지털자산일임업자 또는 외국 디지털자산자문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디지털자산거래 등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산안정성을 확보할 것
 8. 디지털자산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제27조(등록의 신청 등) ① 제26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디지털자산업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6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디지털자산업등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1. 제26조제2항의 디지털자산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등록부·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등록부·디지털자산일임업등록부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등록요건의 유지) 제26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업등록을 한 자는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자·디지털자산일임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3. 디지털자산일임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자가 등록업무 단위별 디지털자산운용인력 또는 매매권유자문인력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월별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상 계속 제출하지 않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보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6.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디지털 자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제26조제2항제5호의 등록 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 된 요건을 적용한다.

제3절 신고요건 및 절차

제31조(미신고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디지털자산업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또는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32조(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의 신고) ①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일 것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받은 자
 - 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2. 임원이 제36조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관련된 거래 등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산안정성을 확보할 것
 5. 디지털자산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식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서식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6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

1. 제1항의 신고서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2항의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의 신고) ①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34조(신고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만,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자가 전자금융업자인 경우로 한한다.

2.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
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경우

4.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
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디지털자산업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제1절 대주주 및 임원

제35조(대주주의 변경 승인) ① 디지털자산업자(디지털자산매매업자,
디지털자산중개업자 및 디지털자산보관업자에 한한다)가 발행한 주
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

하 이 장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개월이 된 날부터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

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자, 디지털자산일임업자 및 디지털자산자문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디지털자산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디지털자산업자 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
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
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
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
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
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7조(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구성) ① 디지털자산업자(자산규
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
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
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디지털자산업자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디지털자산업자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⑤ 디지털자산업자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외이사는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자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감사위원회) ① 디지털자산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1.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주요주주

2.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3. 그 밖에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디지털자산업자는 감사위원의 사임 · 사망 등의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디지털자산업자가 이 조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다.

⑥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9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디지털자산업자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업자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 또는 감사는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자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내부통제기준)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디지털자산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사내이사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 또는 외국 디지털자산업자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디지털자산업자(외국 디지털자산업자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⑤ 디지털자산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⑥ 디지털자산업자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4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 또는 외국디지털자산업자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디지털자산, 금융 및 법률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43조(위험관리기준)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디지털자산업자(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4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 또는 외국디지털자산업자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디지털자산 및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45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본질적 업무(해당 디지털자산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겸영(兼營)업무

4.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46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디지털자산업자의 의무)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업자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자산업자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47조(재무건전성 유지) ① 디지털자산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을 디지털자산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금·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디지털자산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경영건전성기준)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그 밖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디지털자산업자가 영위하는 디지털자산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업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회계처리)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를 디지털자산업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2. 디지털자산업자의 고유재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디지털자산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따를 것

② 디지털자산업자의 고유재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업자는 전산 및 해킹,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디지털자산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디지털자산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51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디지털자산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지털자산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그 디지털자산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그 디지털자산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디지털자산을 매매하거나, 증개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그 디지털자산업자의 특수관계인(디지털자산업자의 대주주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디지털자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디지털자산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디지털자산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그 밖에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④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의 대주주(법인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디지털자산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디지털자산 또는 증권의 신규취득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공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디지털자산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디지털자산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디지털자산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3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의 대주주가 제5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절 전산안전성 유지

제54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 · 중개 ·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디지털자산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55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이용자와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디지털자산 관련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는 안전한 전자적 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디지털자산업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의 종류, 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자산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디지털자산의 전자적 거래 관련 사고 예방 및 조치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④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정보기술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기술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정보기술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기술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전자적 침해행위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디지털자산 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디지털자산 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정보기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디지털자산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4. 디지털자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잘못 된 정보가 제공되는 사고

③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정보기술시설이 교란
· 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59조(보험등의 가입) 디지털자산업자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절 공통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60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하려는 경우 이용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디지털자산업의 종류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형평에 맞게 해석·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2조(상호) ① 디지털자산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디지털자산업” 또는 “가상자산업”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자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디지털자산매매업자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디지털자산매매업” 또는 “가상자산매매업”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자로 대통령에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③ 디지털자산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디지털자산중개업” 또는 “가상자산중개업”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자로 대통령에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④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디지털자산거래소”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자로 대통령에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⑤ 디지털자산보관업자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디지털자산보관업” 또는 “가상자산보관업”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자로 대통령에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⑥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또는 “가상자산집합운용업”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자로 대통령에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⑦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또는 “가상자산지갑관리업”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자로 대통령에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⑧ 디지털자산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디지털자산자문업” 또는 “가상자산자문업”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자로 대통령에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⑨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또는 “가상자산주문전송업”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자로 대통령에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⑩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또는 “가상자산유사자문업”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자로 대통령에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63조(명의대여의 금지) 디지털자산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4조(디지털자산업자의 업무위탁)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디지털자산업과 관련하여 그 디지털자산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디지털자산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디지털자산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디지털자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디지털자산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디지털자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이용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⑦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⑧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제5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⑨ 제74조 및 제75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⑩ 그 밖에 업무의 위탁·재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검사 및 처분) ① 제6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6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13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에서 정하는 경우

제66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디지털자산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디지털자산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제40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제67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

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관 설명의무 및 광고규제 등

제68조(설명의무)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일반이용자를 상대로 디지털자산의 매매 또는 디지털자산 관련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의 내용, 일반 디지털자산의 가격 변동성, 디지털자산 매매에 따른 위험, 디지털자산업자와 계약의 주요사항,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일반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 또는 해당 디지털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9조(부당권유행위 금지) 디지털자산업자는 디지털자산의 매매 또는 디지털자산 관련 계약의 체결(이하 “계약체결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디지털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업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디지털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매매 또는 디지털자산 관련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5. 계약체결등의 권유를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70조(디지털자산업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디지털자산업자가 아닌 자는 디지털자산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광고(이하 “디지털자산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22조의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디지털자산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② 디지털자산업자가 디지털자산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업무 등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업자가 하는 디지털자산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자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디지털자산업자의 명칭 및 종류
3. 디지털자산은 이용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④ 디지털자산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협회는 디지털자산업자의 디지털자산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1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이용자와 디지털자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업자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이 이용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이용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디지털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① 디지털자산업자(디지털자산일임업자, 디지털자산자문업자,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자 및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에 관한 입고 또는 출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다.

② 디지털자산업자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에 관한 입고 또는 출고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사전 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산업자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에 관한 입고 또는 출고를 차단한 사실을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손해배상책임)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제7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

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7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② 디지털자산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디지털자산업자는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디지털자산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이용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이용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이용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제76조(약관)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디지털자산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이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 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7조(수수료)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용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디지털자산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78조(자료의 기록·유지)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디지털자산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9조(디지털자산 관련 거래의 비밀보장) ① 디지털자산업자(임직원을 포함하며, 디지털자산일임업자, 디지털자산자문업자, 디지털유사자문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디지털자산 관련 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디지털자산업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이용자 디지털자산의 횡령 또는 탈취 등 디지털자산 관련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디지털자산업자 내부 또는 디지털자산업자 상호 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제132조의 시장감시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제132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법인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디지털자산업자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디지털자산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0조(디지털자산업 폐지 공고 등)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디지털자산

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 전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디지털자산업자가 행한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디지털자산업자는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서 디지털자산업자로 본다.

1.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디지털자산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디지털자산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140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인가 또는 디지털자산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81조(임직원의 디지털자산 매매) ① 디지털자산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디지털자산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디지털자산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디지털자산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디지털자산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디지털자산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디지털자산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

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 또는 계정을 통하여 매매할 것

3.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디지털자산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디지털자산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디지털자산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디지털자산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디지털자산업자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관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및 디지털자산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제82조(매매형태의 명시)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자에게 자기가 디지털자산매매업자인지 디지털자산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제83조(자기계약의 금지)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디지털자산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가 다른 디지털중개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소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제84조(최선집행의무) ①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디지털자산의 매매에 관한 이용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디지털자산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를 교부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임의매매의 금지)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이용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디지털자산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재산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할 수 있다.

제86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디지털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디지털자산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디지털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디지털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7조(신용공여)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금전의 용자 또는 디지털자산 대여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자산매매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을 그 디지털자산매매업자로부터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이용자에게 금전의 용자, 그 밖의 신용공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88조(이용자 예치금의 보호) ①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 ·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관리기관은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 · 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디지털자산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디지털자산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디지털자산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

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89조(디지털자산의 보관) ①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이용자가 보관을 위탁한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명부에 기재된 디지털자산은 이용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보관을 위탁하는 디지털 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주소(디지털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 ②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자기의 디지털자산과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디지털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디지털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④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자산보관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90조(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업자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디지털자산업자의 계좌와 그 디지털자산업자의 이용자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이 가능한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디지털자산중개업자의 디지털자산중개업 및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다자간매매체결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그 밖에 해당 디지털자산중개업자의 디지털자산중개업 및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③ 디지털자산중개업자로서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또는 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디지털자산보관업자의 준수사항

제91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디지털자산보관업자는 이용자가 보관을 위탁한 디지털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보관업자는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2조(디지털자산의 보관 등) ① 디지털자산보관업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명부에

기재된 디지털자산은 선택된 것으로 본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보관을 위탁하는 디지털 자산의 종류 및 수량

② 디지털자산보관업자는 자기의 디지털자산과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디지털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디지털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보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기술적으로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인 경우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3조(보관계약 및 신용공여) ① 디지털자산보관업자는 이용자와 보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및 디지털자산보관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보관대상 디지털자산의 종류 · 수량과 가격

3. 계약기간

4. 전산장애 및 해킹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보상 금액 및 방법

5. 디지털자산보관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6. 보관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디지털자산보관업자는 금전의 융자 또는 디지털자산 대여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제3관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의 준수사항

제94조(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의 준수사항등) ①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행위
 2.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지갑을 이용하여 디지털자산을 입고 또는 출고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가 디지털자산매매업, 디지털자산증개업, 디지털자산보관업 또는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보관을 위탁받을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자의 지갑에서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과 이용자가 보관을 위탁한 디지털자산을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③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는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류에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및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계약기간
 3. 전산장애 및 해킹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보상 금액 및 방법
 4.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는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아니하는다는 사실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관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의 준수사항

제95조(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의 준수사항) ①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운용을 위탁한 디지털자산을 그 디지털자산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지털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주

는 행위

2. 이용자가 위탁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3. 이용자가 위탁한 디지털자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다만, 이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다른 디지털자산과의 교환하

는 행위 등 대통령에서 정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4. 이용자에게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5. 이용자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

③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자는 이용자에게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의 관리에 따른 예상 이익률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자의 수수료

3. 전산장애 및 해킹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제5관 디지털자산일임업자 및 디지털자산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96조(계약의 체결) ① 디지털자산일임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자는 일반이용자와 디지털자산일임계약 또는 디지털자산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일임의 범위 및 매매대상 디지털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의 범위 및 제공방법
2. 디지털자산일임업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 수행에 관하여 디지털자산일임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디지털자산일임업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일반이용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디지털자산일임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디지털자산일임계약 또는 디지털자산자문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결과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이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매매실적의 평가 및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방법(디지털자산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일반이용자는 디지털자산일임의 매매대상의 범위 등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그 밖에 일반이용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디지털자산일임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자는 일반이용자와 디지털자산일임계약 또는 디지털자산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자산일임업자에게 일임된 디지털자산 또는 금전 등이 보관 또는 예치된 디지털자산매매업자 · 디지털자산중개업자, 그 밖의 디지털자산업자의 명칭

제97조(디지털자산일임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자의 준수사항) ① 디지털자산일임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반이용자로부터 금전 · 디지털자산, 그 밖의 재산의 보관 · 예치를 받는 행위
2. 일반이용자에게 금전 · 디지털자산,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 디지털자산,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증개 ·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4. 일임된 디지털자산 등을 운용하거나 이용자문에 응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 의사의 또는 매매판단에 관한 자문을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디지털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5. 일임재산의 운용실적 또는 디지털자산자문과 관련한 매매결과와 연동한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
- ② 디지털자산일임업자는 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자가 발행하거나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자가 발행하거나 보유한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17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일임재산으로 그 디지털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5. 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일임재산으로 자신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일임재산으로 자신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디지털자산을 매수하는 행위
8. 일임재산을 각각의 이용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이용자의 일임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8조(일임보고서의 교부) ① 디지털자산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디지털자산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일임재산의 운용현황
 2. 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 · 거래실적 및 잔액
- ② 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관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및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99조(계약의 체결) ①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자는 일반이용자와 디지털자산주문전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주문업자의 명칭
 2. 주문전송의 방법 및 주문이 전송되는 디지털자산업자(디지털자산 매매업, 디지털자산중개업으로 한한다. 이하 이관에서 같다)의 종류 및 명칭
 3.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수행에 관하여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4. 일반이용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디지털자산주문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주문전송에 따른 매매결과가 일반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이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주문전송의 결과를 일반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8. 일반이용자가 디지털자산업자에게 직접 주문을 접수시킬 수 있다 는 사실
 9. 그 밖에 일반이용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디지털자산주문업자는 일반이용자와 디지털자산주문전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이용자의 주문이 전송되는 디지털자산업자의 명칭

제100조(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자의 준수사항)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자는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로부터 금전·디지털자산,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치를 받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금전·디지털자산,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디지털자산,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4. 이용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디지털자산업자에게 주문을 전송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주문전송요구를 차단하는 행위
6.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자가 전송한 주문의 오류 또는 체결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01조(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의 준수사항) ①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이용자로부터 금전·디지털자산,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치를 받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금전·디지털자산,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디지털자산,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②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1.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를 다른 종류의 디지털자산업자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매매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③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매매관련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는 사항
3.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라는 사항

제5편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디지털자산발행신고서

제102조(적용범위) 이 장은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요건) 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대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

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5.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불 방법 및 환불준비금 등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할 것

6.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7. 임원이 제36조에 적합할 것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누구든지 제2항제5호에 따라 발행인이 적립한 환불준비금을 상계·압류(가입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환불준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7항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

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자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 제5항 및 제7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6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발행의 신고) 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그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 발행 및 운영 인력의 이력과 정보
3.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정보
4. 디지털자산의 산업적 사용 목적 및 활용 계획 정보
5. 총 발행량과 기간별 발행 또는 채굴량에 관한 정보
6. 이용자 보호 계획 정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에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자산의 활용 계획에 따른 성과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발행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행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발행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자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대표자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발행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발행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신고서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금융위원회는 신고 수리한 발행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모집의 경우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5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산 발행의 신고(이하 “발행신고”라 한다)는 그 발생신고서가 금융위원

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발행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발행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디지털자산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은 가지지 아니한다.

④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발행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발행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여 디지털자산의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디지털자산의 이용자가 취득하기 이전에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그 발행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

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발행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

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

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

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그 디지털자산의 이용자가 취득하기 이전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이나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제107조(금융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신고의 신고인,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디지털자산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발행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108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신고의 신고인, 디지털자산의 발행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9조(미지정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업자(이하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라 한다)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디지털자산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110조(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적격성평가) 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기 전에 제130조에 따른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거래지원적격성평가를 신청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래지원적격성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지원적격성평가신청서에 흄결이 있는 경우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발행인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방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자산의 법규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31조에 따른 거래지원규정에서 규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지원적격성평가신청을 받은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신청한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거래지원적격성평가신청을 받은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흡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6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로부터 적격 평가를 받은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래지원을 하지 아니하면, 적격 평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11조(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 및 유지심사) 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거래지원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지원기준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지원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보고서를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2조(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종료) 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거래지원종료 여부 등에 대해서 심사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종료를 요청한 경우
2. 발행인(디지털자산의 발행권한을 가진 자도 포함한다)이 총 발행

량 등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디지털자산의 분산원장에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디지털자산의 발행권한이 해킹 등으로 침해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거래지원종료를 요청하는 사유 등이 기재된 거래지원종료신청서를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제1호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지체 없이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게 해당 디지털자산에 대해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자료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1개월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심사와 관련해서 디지털자산거래소등 및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발행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심사결과가 거래지원종료인 경우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

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 거래지원종료를 요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거래지원종료 대상 및 기준일
2. 거래지원종료 사유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⑦ 제3항 및 제6항의 요구를 받은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정당한 사유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3조(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공시사항) 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 및 거래지원 종료에 관한 기준
3. 디지털자산시장의 개폐·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4.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5.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예치금 이용료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자산 입고 또는 출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거래지원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의 주요 내용

2.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설명서

3.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심사(제111조제2항에 따른 거래지원기준 유지심사를 포함한다)의 주요 내용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제3항에 따른 공시사항에 대해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신고서”는 “제1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으로 “신고인” 및 “발행인”은 “디지털자산거래소등”으로 본다.

제114조(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이용자보호조치)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의 거래 및 이용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래유의 종목의 지정

2. 주문 금액 또는 수량의 제한
3. 디지털자산의 입고 또는 출고의 제한
4. 제130조에 따른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또는 제13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조치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제115조(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디지털자산업자, 디지털자산의 발행인(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직원 ·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디지털자산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디지털자산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16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15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15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장 시세조종 등

제117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디지털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디지털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그 디지털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디지털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디지털자산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그 디지털자산이 거래지원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디지털자산의 수요·공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디지털자산의 발행인 또는 그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디지털자산매매업자에게 위탁한 매매 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

2.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디지털자산의 수

요·공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디지털자산매매업자에게 위탁한 매매거래 (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

3. 디지털자산매매업자가 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4. 디지털자산매매업자가 제2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디지털자산매매업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제117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디지털자산에 관한 매매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17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11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발행 및 거래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0조(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1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

(轉得)한 자

-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그 정보가 지정 디지털자산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 나. 그 정보가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 ②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위가 제117조 또는 제11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디지털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디지털자산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디지털자산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1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19조 및 제120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19조 및 제120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7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등

제1장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제122조(설립) ① 디지털자산산업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

하여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
디지털자산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4조(회원 가입 등)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수
취할 수 있다.

제125조(업무) 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행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

제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적격성평가 및 거래지원종료심사
 4.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및 회원에 대한 감리
 5.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6. 디지털자산업의 표준 약관의 제정 및 개정
 7.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8.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 가. 디지털자산운용인력
 - 나. 매매권유자문인력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제126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조직은 디지털자산업의 종류를 기준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운영되어야 한다.

4.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사무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회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7조(준용규정) 제36조, 제74조 및 제81조는 협회에 준용한다.

제128조(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협회에 대한 검사) 제1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제외한다)는 협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제2장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제130조(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적격성에 관한 평가
 2.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종료에 관한 심사
 3. 제131조에 따른 디지털자산거래지원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②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장”이라 한다)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명
 3. 협회가 추천하는 4명
 4.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추천하는 2명
- ③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④ 평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평가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평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협회는 2개월 이내에 평가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36조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할 수 없다.

⑧ 금융위원회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그 밖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1조(디지털자산거래지원규정) ①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요청한 거래지원적격성평가 및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지원규정(이하 “거래지원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협회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거래지원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적격성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종료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자산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자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시장감시위원회

제13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협회는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자산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장감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
2. 디지털자산거래소등 간의 연계감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제13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의 제정 · 변경 및 폐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4명

3. 협회가 추천하는 4명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협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의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36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할 수 없다.

⑧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3조(시장감시규정)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 및 예방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시장감시규정(이하 “시장감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감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거래소등 간의 연계감시에 관한 사항
 3.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디지털자산거래소등 간의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징계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부수하는 사항

제134조(회원에 대한 감리)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1.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디지털자산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이 시장감시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회원이 제119조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시장감시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매매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해당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제135조(감독)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

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3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자 및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디지털자산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자산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2.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 이용자예치금 및 위탁 디지털자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

6. 이용자예치금 및 디지털자산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디지털자산업자로의 이전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인수

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

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2. 디지털자산의 매매제한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 해임, 등기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승인사항 등) ① 디지털자산업자(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자 및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 해산

4.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5.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6.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7.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의 기준·방법, 그 밖의 승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보고사항) 디지털자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한 때

2.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5.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6.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7.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8.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9.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10.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11. 본점 ·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1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139조(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검사) ① 디지털자산업자 및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이하 “디지털자산업자등”이라 한다)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디지털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디지털자산업자등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자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0조(디지털자산업자등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업인가, 제26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업등록, 제103조에 따른 발행인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디지털자산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조건 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의 유지의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제28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인가를 받은 경우
5.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 및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디지털자산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디지털자산업인가, 디지털자산업등록, 발행인인가가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이

로 인하여 해산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디지털자산 관련 계약 및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41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등의 임원이 제1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등의 직원이 제1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디지털자산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2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0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

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140조제1항에 의한 디지털자산업 및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인가·등록의 취소
3. 제141조에 의한 디지털자산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143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4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디지털자산업자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은 디지털자산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 ⑤ 디지털자산업자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4조(디지털자산업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40조제1항

• 제3항, 제14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장 조사 등

제145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

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15조, 제117조, 제119조 및 제12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또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께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146조(거래등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15조, 제117조, 제119조 및 제120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은 닉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자산의 매매, 입고 및 출고, 예치금의 입금 및 출금 등의 거래(이하 “거래등”이라 한다)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이용자의 계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디지털자산업자에게 거래등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거래등의 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등의 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

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디지털자산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등의 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정에 대하여 자체 없이 거래등의 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정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디지털자산업자에게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자산업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디지털자산업자의 임직원은 거래등의 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거래등이 정지된 계정에 대하여 거래등 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등 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계정이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3.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거래등 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거래등 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등 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45조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디지털자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 다만,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 디지털자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이 경우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 본다)를 포함한다]으로서의 선임·재임(在任)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자산업자 및 시장감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제한대상자가 보유한 디지털자산 및 계정정보

2.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디지털자산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제3항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감시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가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리는 해당 디지털자산의 처분명령

2. 주권상장법인등이 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절차,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8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① 금융위원회는 제115조, 제117조,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 ② 조사공무원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 ③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심문·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還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⑤ 조사공무원이 영치·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 과정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 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⑥ 조사공무원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과징금

제149조(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가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2.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3. 제5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②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1조제1항의 거래지원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 날부터 거래지원 종료일까지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의 금액
2. 제111조제2항의 유지심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디지털자산의 유지심사종료일부터 거래지원 종료일까지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의 금액
3. 제112조제6항에 따른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의 거래지원종료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거래지원종료기준일부터 거래지원종료일까지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의 금액

③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하여 제14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7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디지털자산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0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0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04조에 따른 신고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04조에 따른 신고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제113조제3항에 따른 공시사항에 대해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1조(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5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2. 제117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3. 제119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63조제1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2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2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150조 및 제15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14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4조(이의신청) ①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5조(준용규정) 과징금의 징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3조, 제434조 및 제434조의 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제9편 보칙

제156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6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⑤ 신고자등이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7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협회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8조(외국디지털자산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디지털자산업 감독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디지털자산감독기관”이라 한다)과 감독 및 조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디지털자산감독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디지털자산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디지털자산감독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외국디지털자산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조사 또는 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의 위반과 관련된 처분, 재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감시위원회는 외국의 디지털자산시장 감시기관과 시장감시 업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감시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시장감시위원회”로 보며, “외국디지털자산감독기관”을 각각 “외국의 디지털자산시장 감시기관”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제15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0조(디지털자산 관련 분쟁 조정) 디지털자산업자,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1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 · 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 · 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시 ·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1. 발행신고서에 관한 사항

2. 이 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자산거래소등 외에서의 디지털자산의 매매 등 거래의 감독

에 관한 사항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162조(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151조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16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편 별 칙

제163조(별 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15조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업자 및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 르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디지털자산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5.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並科)할 수 있다.

제164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
지 않고 디지털자산업(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 디지털자산집합관리
업 · 디지털자산일임업 · 디지털자산자문업 또는 디지털자산주문전
송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업인가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디지털자산업자와 그로부터
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5. 제52조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

6. 제7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

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7. 제85조를 위반하여 이용자가 보관을 위탁한 디지털자산 또는 예치금 등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한 자
 8. 제86조, 제95조제2항, 제97조제1항, 제100조 또는 제101조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90조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업자로 지정을 받지 않고 디지털자산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10. 제104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을 발행한 자
 11. 발행신고서 및 관련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04조제5항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12. 제140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13. 제1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 제165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고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 디지털자산일임업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63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5. 제7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 · 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않고 디지털자산을 매매한 자
8. 제130조제7항 또는 제13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9. 제1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140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11. 제1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

를 영위한 자

12. 제145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한 자

제1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주문업 또는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6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 제6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82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디지털자산매매업자인지 디지털자산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않고 디지털자산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7. 제83조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을 매매한 자

8. 제62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 각각 항에서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자

9. 제10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10. 제1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6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

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제163조부터 제16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68조(몰수 · 추징) ①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6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69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0조(형벌 등의 감면) ① 제115조, 제117조 또는 제119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금융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 · 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

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반행위로 제15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5.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7. 제5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0.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8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88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기 아니한 자

13. 제89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14. 제156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을 매매한 자에 대해 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3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 최초로 수립하는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수립한다.

제3조(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에 관한 사항) ① 금융위원회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법」 제309조, 제311조제1항, 제312조 및 제316조는 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1조제1항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④ 설립위원회는 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협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라 사무의 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설립위원회는 이 법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 협회의 설립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⑩ 그 밖에 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에 의한 디지털자산업 인가 및 등록 특례) ①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제7조제2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23조의 인가유지요건, 제28조의 등록유지요건 또는 제90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3조의 인가유지요건, 제28조의 등록유지요건 또는 제90조의 지정요

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의 인가유지요건, 제28조의 등록유지요건 또는 제90조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디지털자산업인가를 받거나 디지털자산업등록을 하거나, 디지털자산거래소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23조의 인가유지요건, 제28조의 등록유지요건 또는 제90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제19조, 제25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디지털자산업자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23조의 인가유지요건, 제28조의 등록유지요건 또는 제90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3조의 인가유지요건, 제28조의 등록유지요건 또는 제90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폐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폐지한다.